#### ●산림청공고 제2022-64호

「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2월 24일

산림청장

## 「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임업·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「임업·산림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8535호, 2021. 11. 30. 제정, 2022. 10. 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

#### 가. 목적(안 제1조)

-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나. 임산물생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조)
  -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
- 다. 소규모임가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3조)
- 소규모임가의 범위를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되는 임가로 규정함라.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4조)
  -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정함
- 마.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5조)
  - 임업인과 농업법인의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을 정함
- 바.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)
-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
- 사. 지급 제외 예외 조건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7조)
-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 양수 등에도 불구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함
- 아.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8조)
- 산지 면적·영농종사기간·농촌거주기간 등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정함
- 자.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9조)
  -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와 지급방법을 정함
- 차.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0조)
-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의 산출방식 등을 정함
- 카.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1조)
- 임업인, 농업법인별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을 정함
- 타.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2조)

- 면적직접지불금 지급금액의 산출 및 지급방법을 정함
- 파.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3조)
  - 토양 유지·관리, 산지정화활동 등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무준수사항을 정함
- 하.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4조)
-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함
- 거. 교육 이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)
-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의 내용과 교육 실시기관 등을 정함
- 너.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6조)
-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타사항을 정함
- 더.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한 산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7조)
- 산림보호구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를 정함
- 러.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8조)
- 임업인과 농업법인의 육림업 주업기준을 정함
- 머.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9조)
-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의 산출방식 등을 정함
- 버.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0조)
- 임업인, 농업법인별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을 정함
- 서,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1조)
-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금액의 산출 및 지급방법을 정함
- 어.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2조)
- 임도, 진입로, 작업로 관리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함
- 저. 입목의 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3조)
  - 수종별 ha당 유지해야 하는 적정 나무그루 수의 기준을 정함
- 처.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4조)
-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타사항을 정함
- 커.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5조)
-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절차, 자료 요청 등의 사항을 정함
- 터.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6조)
-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
- 퍼. 체납가산금의 요율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7조)
- 체납된 금액에 부가할 체납가산금의 요율을 정함
- 허.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8조)
-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및 통계 구축, 자료제공 요청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
- 고. 지도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9조)
- 지도·감독·관리 대상, 계획 수립, 합동점검반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함

- 노. 관리기관의 지정 ·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30조)
- 지방산림청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- 도.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31조)
  - 산림청장 권한 중 일부를 지방산림청장, 시·군·구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정함
- 로.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32조)
- 산림청장 및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범위를 정함
- 모.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33조)
- 조사·수거·열람 등을 거부·방해한 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
- 보.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신설(안 부칙)
-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정함

#### 3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.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-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  - 일반우편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2동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
  - 전자우편 : lhd3577@korea.kr
  - 팩스: 042-489-2749
-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(전화 042-481-1248, 팩스 042-489-27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●산림청공고 제2022-65호

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2월 24일

산림청장

#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임업·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「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8535호, 2021. 11. 30. 제정, 2022. 10. 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

#### 가. 목적(안 제1조)

-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함
- 나. 임산물생산업의 품목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조)
  -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품목을 명확히 규정함
- 다.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신설(안 제3조)
  - 휴경 중인 산지의 의미를 규정함
- 라.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4조)
  -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정함
- 마.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5조)
  -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방법과 신고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함
- 바. 농약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)
  - 농약 사용의 적정 기준을 정함
- 사.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7조)
  - 임업·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의무이수시간 및 이수증 제출방법을 정함
- 아. 교육기관 현황 게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8조)
  - 교육기관 현황 게시방법 및 교육실시 기관의 관리의무 등을 정함
- 자.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9조)
  -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등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을 정함
- 차.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0조)
  -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와 휴경 중인 산지의 의미를 정함
- 카.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1조)
  -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정함

- 타.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2조)
  -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등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을 정함
- 파. 등록신청의 공고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3조)
  -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방법을 정함
- 하.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4조)
  - 등록신청 방법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
- 거.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)
  - 등록신청 내용 조사를 위해 읍·면·동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방식을 정함
- 너.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6조)
  - 조사위원회 내 위원 해촉, 개의, 의결, 수당 등 운영방법을 정함
- 더.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7조)
  -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조사, 등록 및 등록거부 등을 정함
- 러.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8조)
  - 재심사 신청 및 재심사 결과 처리방법을 정함
- 머.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9조)
  -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변경등록·변경신고 방법 등을 정함
- 버. 조사계획의 수립 · 통보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0조)
  -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계획 통보 방법을 정함
- 서.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1조)
  - 조사·수거 등의 사무를 보조하는 조사원의 고용 근거와 공무원 및 조사원의 증표 서식을 정함
- 어.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2조)
  -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보관·비치 서류 종류 및 의무 비치 기간을 정함
- 저.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3조)
  -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및 부과·징수절차를 정함
- 처.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4조)
  -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 열람 시기 및 방법을 정함
- 커.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5조)
  - 열람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를 정함
- 터.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6조)
  - 명예감시원의 자격, 위촉방법, 임무 등을 정함
- 퍼.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7조)
  -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, 포상금 지급예외 사례 등을 정함
- 허.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8조)
  - 지급대상자 등록, 준수사항 조사 등 시상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정함
- 고.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신설(안 부칙 제1조)

-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정함
- 노.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(안 부칙 제2조)
-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이전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"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"로 봄 3. 의견제출
-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.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-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  - 일반우편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2동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
  - 전자우편 : lhd3577@korea.kr
  - 팩스: 042-489-2749
-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(전화 042-481-1248, 팩스 042-489-27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